

제 681 호
1978.10.12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구 자 훈
편집 : 문화공보관 김 인 동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활판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배	
제 1288 호 :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건축조례승개정조례	3
◎ 고	시	
제 527 호 :	동청사위치고시	4
제 528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신설지적승인	5
제 529 호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신설지적승인	6
제 530 호 :	1978년도제 2 회서울특별시세입세출추경정예산고시	7
제 531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 도로) 지적승인	8
제 532 호 :	도시계획시설 (시장) 지적승인	8
제 533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 도로) 지적승인	9
제 534 호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적승인	9
제 535 호 :	도시계획시설 (공원 , 도로) 변경결정	10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이면 계속>
2. 시보는 공무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536 호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	10
제 537 호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폐지지적승인	11
제 53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2
제 539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12
제 54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지적승인	13
제 541 호 :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	15
제 542 호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	16
제 543 호 :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및 변경	23
제 544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및하수도) 결정지적승인	24

◎ 공 고

제 410 호 :	KS 표시정지처분	24
제 411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25
제 414 호 :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25
제 450 호 (성동구공고) :	공인신조공고	26
제 242 호 (관악구공고) :	공인신조공고	30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8. 10. 12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

○ 서울특별시조례 제 1288 호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중 "아파트지구"를 "아파트 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지구 내에서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 1. 공동주택 : 3,000 평방미터
- 2. 기타의 건축물 : 300 평방미터

제 4 조 내지 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조(건폐율) 지구내에서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 25%

2. 기타의 건축물 : 50%

제 5 조(용적율) 지구내에서 용적율은 200%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 6 조(인동거리) ①지구내 동일대지안에서 다른 건축물 또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의 대향부까지의 수평거리(인동거리)는 공동주택 높이의 1.2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지구내 동일대지안에서 공동주택과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당해 건축물 높이의 0.625배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7 조(아파트의 규모 제한) 지구내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길이는 건축물 높이의 4배에 해당하는 길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8 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구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대지는 폭 8미터이상(길이 35미터를 넘는 막다른 도로는 폭 12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12미터이상을 접하거나 6미터이상을 2개소이상 접하여야 한다.

제 9 조(건축물의 형태) ①시장의 지구내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하여 영 제 17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구내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 10 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

전의 기존건축물로서 이 조례에 의한 건축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영 제 180 조제 2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527 호

동 청사위치 고시

78.10.10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신설된 동 및 명칭변경된 동의 청사위치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8.10.10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다 음

구 별	동 명	위 치
중 구	향 학 동 사무소	중구 신당동 136-3 (구신당 8 동사무소)
동대문구	장안재 1 동사무소	동대문구 장안동 73-8 (구장안동사무소)
"	장안재 2 동 "	동대문구 장안평토지정리사업지구 15 부력 B 동
성 동 구	자양재 1 동 "	성동구 자양동 220-211 (구자양동사무소)
"	자양재 2 동 "	" 화양추가 구획정리지구 60 구획
"	중곡재 3 동 "	" 중곡동 174-81
성 북 구	삼선재 1 동 "	성북구 삼선 2 가 42 (구삼선 3 동사무소)
"	삼선재 3 동 "	" 삼선 5 가 349-2 (구삼선 1 동사무소)
영등포구	독산재 3 동 "	영등포구 독산동 산 34 외 나호
"	고척재 2 동 "	" 고척동 170-1
관악구	봉천재 8 동 "	관악구 봉천동 599-19

구	명	위	치
관악구	방배제 1 동사무소	관악구	방배동 26 부락 6 (구방배동사무소)
"	방배제 2 동 "	"	방배동 147-2
"	신림제 8 동 "	"	신림동 540-1
강남구	삼원동 "	강남구	신사동 산 80-5
"	반포제 1 동 "	"	영동 1 지구 1 공구 92-1 (구삼원동사무소)
"	반포제 2 동 "	"	반포동 한신공영아파트 3 단지 29 동
"	잠실제 5 동 "	"	잠실주공아파트 5 단지
강서구	화곡제 3 동 "	강서구	화곡동 225-9
"	신월제 2 동 "	"	신월동 125-5
천호출장소	암사제 1 동 "	강남구	암사동 암사구획지구 36 부택 1 호
"	암사제 2 동 "	"	암사동 514-4

○ 서울특별시고시제 528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신설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60 호 (78.9.8) 로 시설결정고시된 성동구관내 옥정국민학교, 남호국민학교, 성수여자중학교, 금복국민학교, 경동국민학교, 무학국민학교, 동명국민학교, 자양동 화양 추가지구 120 구획 일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

기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의 관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10.10.

서울특별시장

○ 학교신설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옥정 국민 학교	옥수동	233-16 일대	15,008	기존학교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금호국민 학교	금호동 2가 511 일대	15,557	기존 학교
"	성수여자중 학교	성수동 2가 333-17	9,293	"
"	금북 국민 학교	금호동 1가 130-9	10,269	"
"	경동 국민 학교	성수동 1가 19-1 일대	21,712	"
"	무학 국민 학교	하왕십리동 950-1 일대	16,281	"
"	동명 국민 학교	마장동 556 일대	21,537	"
"	자양동 화양추가지구	자양동 화양추가지구 120구획 일대	13,322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529 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신설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89 호(78.9.19)로 시설결정 고시된 성동구 관내 새싹길 간선 하수도(1), 새싹길 하수도(2), 구의동 47일대, 구의동 지내 간선 하수도, 성수동 2가 299일대, 명성천 복개 하수도, 광장전화국 하수도(1), 광장전화국 하수도(2), 능동 238일대 하수도, 성수 2가 52일대, 능동 83일대, 영동교~성수천, 행당천 복개,

천호대로 워커빌후분 지내 도시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제 13조 및 전설부고시 제 41 호(77.3.16)의 권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10.10

서울특별시 장

○ 하수도신설 지적승인조서

구분	폭	연장	기 점	총 점	비 고
신설	1.0	950	송정산 2 일대	송정산 3 일대	새싹길간선하수도(1)

구분	족	연장	기	점	총	점	비	고
신설	1.0	1,100	승정	55-1	구의	3-1	세악길	간선하수도(2)
"	0.6	128	구의	47-10	구의	47-1	구의	47일대
"	0.7	312	구의	233-2	구의	229-1	구의	저내 간선하수도
"	0.7-1.3	428	성수	229-216	성수	299-72	성수	2가 299일대 하수도
"	3.0	930	구의	233-2	구의	246-16	명성천	부계하수도
"	0.7	110	구의	329-3	구의	329-2	광장	전화국 하수도(1)
"	0.8	35	자양	230-1	자양	230-11	광장	전화국 하수도(2)
"	0.6	122	능동	237-6	능동	237-10	능동	237일대 하수도
"	2.0	153	성수	66-9	성수	53-109	성수	2가 52일대
"	0.6	146	능동	81-2	능동	82-3	능동	83일대
"	2.5-4.0	790	성수	19-14	성수	43-8	영동교	~ 성수천
"	6.0	80	행당	159-16	행당	158-34	행당	천 부계
"	2.5	202	광장	246	광장	241	천호	대로 위커힐후반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530 호

1978년도제 2회서울특별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78년

도 서울특별시 각 특별회계 제 2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지방자치법
제 4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비	계	명	예	산	액
국	민	주	택	비	25,931,000
주	택	개	량	비	3,060,000
수	도	사	업	비	40,432,000
지	하	철	운	수	53,802,000
1978.10.11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p>◎ 서울특별시고시제 531 호</p> <p>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373 호(78.7.27) 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를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p>	<p>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의 규정에 외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 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 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10.10</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신설	장훈고등학교	영등포구 독산동 산 115	13,550㎡(4,099평)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신설	소로	2	8 m	100 m	독산동 89-4	독산동 89-4

<p>◎ 서울특별시고시제 532 호</p> <p>도시계획시설(시장)지적승인</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 294 호(78.6.17) 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시장) 을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p>	<p>(77.3.16)의 규정에 외거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 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7.</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가. 도시계획시설(시장)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장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여의종합상가	영등포구여의도동 1-617 외 1필지	3,305	

◎ 서울특별시고시 제 533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60 호(78.9.8)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을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10.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신설 및 변경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고등학교	영등포구 구로 164 일대	30,720(9,293평)	
변경	"	" 구로 164 외 20 필	24,720(7,512평)	1,781평축소
기정	국민학교	" 구로 166 일대	13,230(4,002평)	
변경	"	" 구로 166-5 외 11 필지	11,111(3,361평)	411평축소
신설	"	" 여의도동 1-890	10,413(3,150평)	

나.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 지적승인조서

구분	종류	류별	번호	목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6	100	영등포구구로166-5	영등포구구로176	
변경	소로	3		6	100	"	"	폐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 534 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57 호(78.9.7)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을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77.3.16)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10.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영등포구가리봉동산 12-5 외 4 필지	3,620㎡(1,097평)	포명운수

◎ 서울특별시고시제 535 호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변경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의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1, 2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10.13
서울특별시장

가. 공원조서

구분	공원종류	공원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어린이공원	만리어린이공원	용산서계동 224 일대	9,270㎡ (2,804명)	감 73㎡
변경	"	"	"	9,197㎡ (2,782명)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나.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승로	2	166	15m	310m	서계동(대3-13)	서계동(대2-19)	
변경	승로	2	166	15m	310m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536 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하수도)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고시 제41호(77.3.16)의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10. .
서울특별시

○ 시설결정조서

구분	화	연 장	기 점	총 점	비 고
신설	2.0㎡	166 ㎡	화곡동 24-231	화곡동 24-254	(1)
"	2.0㎡	170.5㎡	등촌동 181-3	등촌동 184-4	(2)
"	7.9㎡	154.4㎡	화곡동 1-1	화곡동 1-103	(3)
"	4.9㎡	206.1㎡	" "	"	(4)
"	2.4 ㎡	49.1㎡	" "	화곡동 1-1	(5)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537 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 488호(78.9.18)로 시설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을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호(77.3.16)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경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10.13
서울특별시

가.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지적승인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여객자동차정류장	영등포구 양병 1가 216번지	662 ㎡	
변경	"	"	"	폐지

◎ 서울특별시고시제 538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3 호 (78.7.27) 로 지적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10.

- 가. 사업시행지 : 서울영등포구오류동 200-1, 2, 199-1, 16, 10, 201-2 (총 8 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서울고등학교 부지조성공사
- 다. 사업시행면적 : 약 1,223.5 평 (진입로 약 71.5 평 대지 1,152 평)
- 라.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용산구갈월동 87-14 호 재단법인 보건학원 이사장 김 호 기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착공 : 시행허가일로부터 1주일내
준공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 지목, 지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 계 지	필 지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오류 200-120 202-1, 2 199-1, 16, 10	8 필지	건	학교용지 1,152 평 도로 약 71.5 평 계 1,223.5 평	성 주 완	

- 사. 토지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 전항과 같음.
- 아. 도면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539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 적 승 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7 호 (78.9.12)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권한 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도시계획시설 지적승인 내역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소토	2	8	260	면북동 1049-190		면북동 1049-159			

78.10.13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54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지 적 승 인

1. 서고시 455 호(77.12.28), 서고시 187 호(78.5.1), 서고시 274 호(78.6.12), 서고시 428 호(78.8.24), 서고시 467 호(78.9.12) 및 전고시 109 호(76.7.19)로 결정된

북동일원동 5개소 지역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77.3.16) 권한 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가. 도 루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	고			
신설	중로	1	178	20	480	담십리동(대 3-11)		담십리동(대 3-40)						
			179	20	300	" (중 1-172)		" (중 1-180)						
			180	20	230	" (19-19)		" 12-203						
			2	170	15	950	" (대 3-10)		" (중 1-179) 일부구간보류					
				171	"	220	" (484-6)		" 496-1					
			"	"	151	"	220	" 483		"				
			"	"	112	12	285	" (중 1-172)		" (중 1-180)				
			소로	2	"	"	8	100	" 482		" (")			
					"	"	"	120	" 483		" (")			
					"	"	"	120	" 490		" (")			
"	"	"			180	북 동 294		북 동 58-5						

35-14 제 681 호 시 보 1978.10.1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목원	연장	기	점	총	점	비	고
신설	소로	2		8	140	목동 113 (중2-165)	목동 60				
"	"	"		"	320	" 120 (")	" 82				
"	"	"		"	175	" 산37 (")	" 88-1				
"	"	"		"	250	" 308	" 71				
"	"	"		"	160	" 78-2	" 71				
"	"	"		"	95	" 83-2	" 83-2				
"	중로	"	185	15	400	" 120	" 121-77				
"	"	1	50	20	800	이 문 동	신 내 동				일부구간 지적승인
"	소로	1		10	680	면목동 1049-41	장안동 237-2				"
"	"	2		8	60	장안동 164-18	장안동 165-25				
"	"	"		8	70	장안동 167-2	장안동 167-19				
"	대로	3	121	25	650	휘경동 (대 3-40)	면목동 (대 3-42)				

나. 공 원 조 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아	동	공	원	장	안	동	206	1,750	

1978. 10. 13

서 울 북 별 시 장

◎ 서울특별시고시제 541 호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 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6 호 (78.5.29) 로 시설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6 호 (78.6.5) 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류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천호출장소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 10. 13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강남구
방이동 290-1 호

자. 사유할 토지내역 및 소유권명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 정류장)
(대흥교통주식회사 정류장 신설)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방이동 267 번지
주식회사 대흥교통 대표이사 이기환

라.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2,217 평방미터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수년월일 : 78.10.15
- 2) 준공예정일 : 78.11.15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아래

사. 위치 및 계획명면도

별첨 (생략)

아. 공사설계도면 : 별첨 (생략)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자	
				주소	성명
강남구방이동 제	290-1 1필지	전	2,217평방미터 2,217	강남구방이동 267	이기환

◎ 서울특별시고시제 542 호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1. 건설부 고시 제 131 호 (76.8.24)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6 호 (76.10.2) 로 아파트지구 지적승인된 강남구잠원동 아파트지구 (제 1-4 주구) 일부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 21 조 등 시행령 제 24 조 및 제 45 조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및 강남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

1978. 10. 13

서울특별시장

○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내역

- 가. 사업시행자
(주) 대림산업 이 정 익
-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강남구잠원동 아파트지구 (제 1-4 주구) (잠원동 64-4 외 일원 : 별첨지번조서)
- 다. 사업계획 개요
 - 사업명 : 아파트 및 동 부대 시설 건설
 - 사업규모 : 아파트 32-49 명형 1,040 세대
 - 사업비 : 31,991,690 천원
 - 사업기간 : 78.10. - 79.12.
- 라. 관계도서의 열람기간
78.10.13 - 78.10.19 (7일간)
- 마.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주택행정과)
강남구청 (시민봉사실)

동 명	지 번	면 적	지번급부호	소 유 자	비 고
잠원동	64-4, 62-8, 64-3 62-7, 62-6, 62-5 64-7, 64-9, 61-1 60-3, 24-3, 65-1 73-2, 74-1, 74-2 74-5, 74-6, 74-7 74-8, 74-9, 74-10	12,999.5		대림산업 (주)	

동명	지 번	면 적	지번급부호	소 유 자	비고			
잠원동	74-11, 74-13, 65-2	12,999.5		대림산업 (주)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5-10, 72-1							
	72-2, 64-6, 61-3							
	65-11, 66-8, 66-9							
	70 72-4, 66-3							
	66-4, 66-2, 72-3							
	72-5, 69, 76							
	85, 80-6, 73-1							
	54-2, 54-3, 54-4, 54-5							
	101, 93-32, 240							
	128-2, 1 외 251							
	24-6							
	108-1							
	73-4					113.2	55	강남구잠원동 73-1 김호주
	77-1					91.4	"	영등신길동 478 한신공영 (주)
	-4					90	"	강남잠원동 86-5 문용운
62-9	27	"	강남잠원동 5외 2 장한국					
64-1	27.3	"	경기도시흥신동면잠실63 서병부					
64-8, -10	120.9	"	영등신길동 478 한신공영 (주)					
77-2	95.4	"	영등신길동 478 한신공영 (주)					
-3	92.4	"	중구대평로 1가 34-2 이광석					
62-10	36	"	종로수송 146-12 대림산업 (주)					
78-1	92.4	"	잠원동 80-10 최성환외 3인					

동 명	지 번	면 적	지번급 부 호	소 유 자	비고
잠원동	78-2	76.7	55	강남구잠원동 78-2 김태량	
	-3	49.3	"	강남구잠원동 83 사삼선	
	-4	83.2	"	강남구 78-4 오경식	
	78-5, 79-5	30.2	"	강남구잠원동 78-5 장병훈	
	79-3, 78-6	52.1	"	강남구잠원동 79-3 박구병	
	78-7	70.4	"	종로창신동 393-3 이정애	
	79-2	55.5	"	강남잠원 78-4 오영식	
	-4	82.6	"	강남잠원동 83 김인숙	
	80-5, 9, 10	157.6	"	잠원동 80 최성국 잠원동 80-10 최성환 외 3인	
	80-8	28.2	"	잠원동 80-10 최성국	
	80-12가	36.5	55가	강남구잠원동 80-13 이정화	
	나	46.7	55나	강남구잠원동 80-13 조수철	
	80-13	83.6	55	강남구잠원동 80-13 이정화	
	-11	116.4	"	영등신길동 478 한신공영주	
	-14	62.4	"	"	
	-15, 16	120.5	"	잠원동 80 박문수 시흥군신동면잠실 83 박필성	
	-17	101.8	"	강남잠원동 80-17 조병희	
	-18	139.7	"	강남잠원동 80-18 박동수	
-19, 21	101.8	"	서대문대현동 27-20 김석기		
-22, 23	65	"	서대문대현동 27-20 김석기		

동 명	대 번	면 적	지번급 부 호	소 용 자	비 고
잠원동	80-24, 25, 26	55	55	강남잠원동 80-24 오종환	
	81-2	35.6	"	강남구잠원동 81-3 박필성	
	-3	42.2	"	강남잠원동 81-3 박성수	
	-4	108.8	"	강남잠원 80 장수억	
	-5	32.7	"	강남잠원 80 김만금	
	-6	27.3	"	강남잠원동 83 박필성	
	-7	83.1	"	강남구잠원동 35-4 노창원	
	82-10	62.6	"	영등포신길동 478 한신공영(주)	
	-11	46.9	"	강남잠원동 82-11 박천만	
	-12	83.9	"	강남구잠원동 81-12 최강출	
	75-1	47.4	"	영등포신길동 478 한신공영(주)	
	55-1	50.5	55-1	서울시	폐지
	-2	36.7	-2	"	"
	-3	27.5	-3	"	"
	-4	21.7	-4	"	"
	-5	32.3	-5	"	"
	-6	24.4	-6	"	"
	-10	35.1	-10	"	"
-11	47.8	-11	"	"	
-12	25.7	-12	"	"	

동명	지번	면적	지번급부호	소유자	비고
잠원동	55-13	25.7	55-13	서울시	채비지
	60-1	27.3	55	"	"
	78-8	41.2	54	영등신길동 478 한신공영(주)	일부지역
	-9	57.3	"	강남잠원동 78-9 여주영	
	83-1	114.8	"	강남구학동 78-4 이오덕	
	-2	90.7	"	강남구잠원동 83 신광일	일부지역
	86-1	75.6	"	강남구잠원동 86-1 김경섭	
	135-2, 3, 4, 5	31.5	54나	용산구용산동 3가 5의 746 조두일	3필중 1
	54-2	50.1	54-2	서울시	일부지역
	82-2, 9	78.1	20	강남잠원동 80 박필성	
	-4	58.7	"	영등신길동 478 한신공영(주)	
	-16	545.7	"	"	
	-17	200	"	"	
	-18	64	"	"	
-19	64	"	"		
-7	31.8	"	경기도시흥군청		
신사동	396-5	47.9	"	영등신길동 478 한신공영(주)	
"	397	65.7	"	서대문구중산동 116-1 조희준	
"	405-7	188.1	"	영등포신길동 478 한신공영(주)	
잠원동	14-10	88.6	196	"	
	-14	80.4	"	"	
	16-6	76.5	"	용산한남동 557-38 한선부	

동명	지번	면적	지번급부호	소유자	비고
감원동	16-7	45.8	196	강남감원동 16-7 박노영	
	16-8, 17-7	73	"	강남감원동 83 장인숙	
	17-1	122	"	강남감원 17-2 문영복	
	-2	116	"	강남감원 17-2 이종국	
	-3	94.8	196가	강남감원 17-3 김장환외 2인	
	-4	44.8	196나	성북정동 67-2 김동환외 1인	
	-5			"	
	18-2, 4	222	196	도봉구미아동 309-13호 장정원의 1인 영등신길 478 한신공영(주)	
	-5	32.4	"	강남감원동 19-4 최경학	
	-3	25	"	영등신길동 478 한신공영(주)	
	19-1, 5	92.9	"	강남감원동 19-4 최경학	
	-3	90	"	강남감원동 19- 노동우	국유지
	-4	63.1	"	용산청파 1가 12-2 최경학	
	-6	58.4	"	"	
	-7	27.1	"	용산청파 1가 12-6 최경학	
	-8	33.1	"	강남구감원 19-8 이용희	
	-9	88.9	"	강남구감원동 17-2 방기섭	
	-10, -11	23.9	"	강남감원동 19-10 노동우	
	18-6	26	"	강남구감원동 18-6 원형찬	
	19-12	30.8	"	강남감원 19-12 이한수	
20-1	109	"	시흥군신동현삼실리 134-10 이준배		
-3	34.1	"	영등신길동 478 한신공영(주)		

35-22

제 681 호

시

보

1978.10.12

동 명	지 번	면 적	지번급부 호	소 유 자	비 고
잠원동	20-4	42.5	196	시흥군신동면잠실리 80 김복남	
	21	72.8	"	영등신길동 478 한신공영(주)	
	63-2	51.8	"	"	
	80-2	66.2	"	강남잠원 80-2 김호철	
	-3	56.6	196 가	강남잠원동 80-4 한성득	
	-4	27	196 나	"	
	1-5 가	81.2	196 가	강원강릉시명주동 65 한인수의 1인	
	나	157.2	196 나	"	
	16-13	100	196	중구북창동 89 오규원	
	-17	94.1	"	"	
	16-14	132.2	"	중구인현동 1가 127-7 조남철	
	-15	93.7	"	중구북창동 89 오규원	
	196-10	18.2	196-10	서울시	제비지
	-1	26	196-1	"	"
	-2	63.5	196-2	"	"
	86-2	동지번 중일부	54부력	한신공영	일부지역
82-3 가	" 중일부	20부력	"	"	

※ 별첨 시행지정 도면의 구획된 단지임.

◎ 서울특별시고시제 543 호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의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78. 10. 14
 서울특별시장

○ 결 정 조 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강남구마천동 128-1 외 3 필지	3,502 ㎡	수도교통
·	·	도봉구우이동 6-1	3,769 ㎡	신원교통
거정	·	서대문구북가좌동 227-1	1,702 ㎡	서부운수
변경	·	서대문구북가좌동 203-10 외 3 필지	3,280 ㎡	서부운수 (1,578 ㎡ 확장)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도시제 544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및하수도) 결정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하수도) 를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41호 (77.3.16)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조서

외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10.16
 서울특별시 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소로	3		6 m	30 m	화곡동 79-7	화곡동 77-10	
"	"	2		8	460	" 61-28	" 56-613	
"	"	2		8	110	" 102-3	" 58-14	

나.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규격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하수도	D=600 mm	L=212.5 m	등촌동 398-21	등촌동산 9-36	



◎ 서울특별시 공고제 410 호
 KS 표시정지처분
 공업표준화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7조 동 제 2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한국공업규격) 표시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78. 10.
 서울특별시 장

허가번호 : 제 1354 호	제 1355 호
허가일자 : 76.11.17	76.11.17
제조업체명 : 신진벨보공업 (주)	과 동
대표자 : 박 찬 언	"
소재지 : 서울영등포구가림동 444	"
규격번호 : KS B 2351	KS B 2353

품 명 : 주철 10kg /  플랜지형 안나사 달로우브벨브	주철 10kg /  플랜지형 안나사 게이트 벨브
규 격 : 2종 40%	2종 70%
처분기간 :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후 당시 와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과 중
처분사유 : 규격미달	,

◎ 서울특별시공고제 411 호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
조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
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

1978. 10.

서울특별시 장

1. 사용개시일자 1978.10.14

2. 인 명 별 첨

공 인 의 인 영

인
영



공인영

강 동 경 찰 서 장

인
영



공인영

강 동 경 찰 서 장 계

◎ 서울특별시공고제 414 호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실시
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제 489 호 (78.9.
19) 로 시설결정 고시된 경능동
895 번지앞 하수도공사 구간내의
저촉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 (하수
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
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
정에 따라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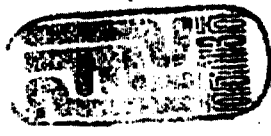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비
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8.10.16







서울특별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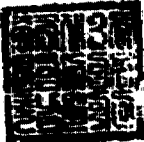

<공 람 개 요>




1. 사업장위치 : 성북구정능동 895 번
지앞 구거
2. 사업의종류와 명칭 : 경능동 895
번지앞 하수도공사
3. 사업의규모 : 암거 (2x2x2 련) =
86 및 부대시설
4. 사업의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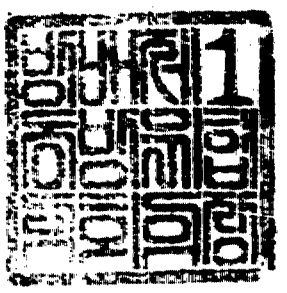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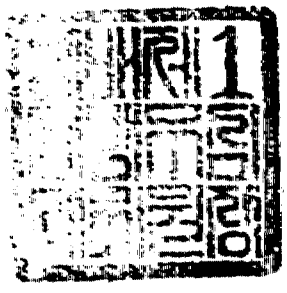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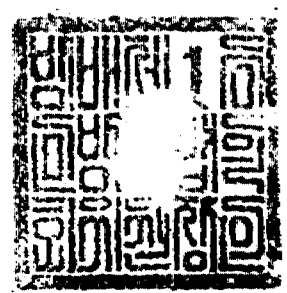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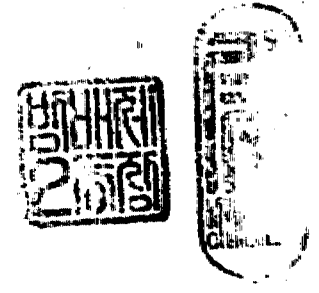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인가일 - 78. 1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공사 토지가격 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1. 호	소 재 지	지 목	수용면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정릉동 979 번지	하천	392 ㎡	대	한 민 국	국
서울특별시성동구공고제 450 호 공 인 신 조 공 고 78.10.10 자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조정 에 따라 폐해되는 자양동의 공인 78.10.10 자로 폐기하고 신설되는 중곡제 3 동, 자양제 1 동, 자양제 2 동의 공인 을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정 에 의거 신조하여 78.10.10. 09:00 부터 사용 을 승인 하였기 동 조례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 한다. 1978. 10 성 동 구 청 장				2. 사용개시일시 : 78.10.10 09:00. 3. 공인인명 : 별첨 4. 폐기공인인명 : 자양동장직인, 제인 자양동 전도자금 출납원인, 분임물품 출납원인 5. 폐기일자 : 78.10.10 6. 폐기공인인명 : 별첨 신 조 공 인		
				인		
				명		
				공인명	중 곡 제 3 동 장 직 인	
				인		
				명		
				공인명	중 곡 제 3 동 장 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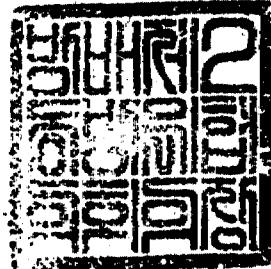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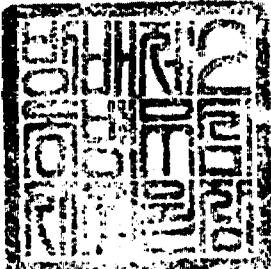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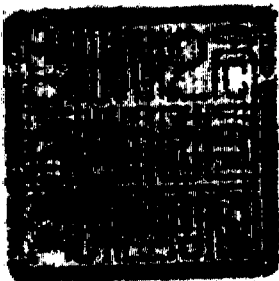

인 영		인 영	
부 인	자양 제 1 동장 직인	부 인	자양 제 2 동장 직인
인 영		인 영	
부 인	자양 제 1 동장 직인	부 인	자양 제 1 동권도자금출납원
인 영		인 영	
부 인	자양 제 2 동장 직인	부 인	도급 경비출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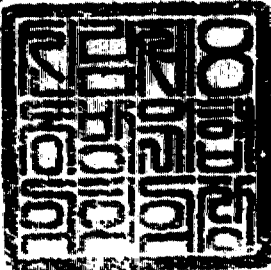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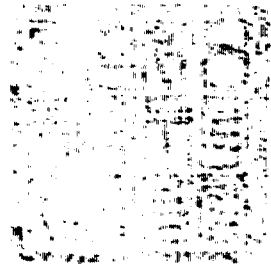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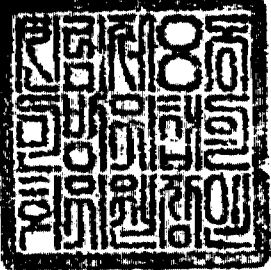


인 영		인 영	
부인영	본 입 수입금 출납원	부인영	도 급 경 비 출납원
인 영		인 영	
부인영	본 입 물 품 출납원	부인영	본 입 수입금 출납원
인 영		인 영	
부인영	자양제 2 동전도자금출납원	부인영	본 입 물 품 출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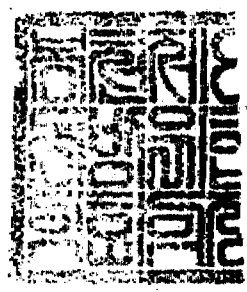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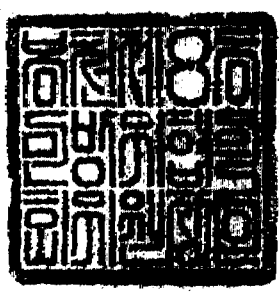


인 영		인 영	
공인명	중곡제3동건도자금출납원	공인명	분임물품출납원
인 영		인 영	폐기동인 
공인명	도급경비출납원	공인명	자양동장직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분임수입금출납원	공인명	자양동장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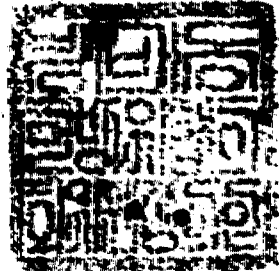
<p>인 영</p>	<p>폐 기 공 인</p> 	<p>공인은 신조사용하고 구공인은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11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폐인조치하였기 동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p> <p>“ 다 음 ”</p> <p>1. 신조공인사용 및 폐인일자 : 1978.10.10 09:00</p> <p>2. 신설 (분동) 권 동명 방배제 1 동, 방배제 2 동 (방배동이분동) 신림제 8 동 (신림제 4 동에서 분동) 봉천제 8 동 (봉천제 4 동에서 분동)</p> <p>3. 신조 및 폐인의 공인명 및 인영 : 별첨</p> <p>1978.10.7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p> <p>신조공인조서 (대장)</p> <p>1978.10.10</p>
<p>공인명</p>	<p>자양동전도자금출납원인</p>	
<p>인 영</p>	<p>분 입 물 품 출 납 원 인</p> <p>◎ 서울특별시 관악구공고제 242 호</p> <p>공 인 신 조 공 고</p> <p>1978.10.10 자 서울특별시 동행정구역변경 (분동)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구역내 일부동이 신설 (분동) 되고 동명칭도 신규명칭이 발생하고 변경된 동명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p>	<p>인 영</p>   <p>공인명</p> <p>방배제 1 동장직인 및 폐인</p>

인 영		인 영	
주요사항	방백 제 1 동건도자금향납원	주요사항	방백 제 1 동방위협의 회장인
인 영		인 영	
주요사항	방백 제 1 동분입수입금출납원인	주요사항	방백 제 1 동방무심사위원장인
인 영		인 영	
주요사항	방백 제 1 동민방위협의 회장인	주요사항	방백 제 2 동장적인및계인

인 영		인 영	
영 영	<p>방배 제 2 동전도자금출납원인</p>	영 영	<p>방배 제 2 동방위협의회회장인</p>
인 영		인 영	
영 영	<p>방배 제 2 동본심수입금출납원인</p>	영 영	<p>방배 제 2 동병무심사위원장인</p>
인 영		인 영	
영 영	<p>방배 제 2 동민방위협의회위원장인</p>	영 영	<p>신림 제 8 동직인및제인</p>

인 양		인 양	
인양	신림 제 8 동전도자금출납원인	인양	신림 제 8 동방위협회의 회장인
인 양		인 양	
인양	신림 제 8 동문인수입금출납원인	인양	신림 제 8 동병무심사위원장인
인 양		인 양	 
인양	신림 제 8 동민방위협회의 회장인	인양	봉천 제 8 동작인및제인

인 영		인 영	
인 영	봉천 제 8 동건도자금출납원인	인 영	봉천 제 8 동방위협의 회장인
인 영		인 영	
인 영	봉천 제 8 동분입수입금출납원인	인 영	봉천 제 8 동방무심사위원장인
인 영		인 영	폐인공인조서 (대장) 1978.10.10 09:00  
인 영	봉천 제 8 동민방위협의 회위원장인	인 영	방백동장직인 및 제인

인 양		인	
주요어	방대동전포가단출단원인		
인 양		양	
주요어	방대동수입단출단원인	주요어	방대동인단위원외위원장인